

☎ 04373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 [http://www.kma.org/전화(02)6350-(내선번호)/전송(02)793-8702  
의무법제국장 김상구(6573)/ 의무팀장 이재용(6540)/ 팀원 서형석(6535)/ E-mail: kma\_shs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3-15919호

시행일자 2023. 3. 22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백신(스카이코비원) 유효기간 연장 관련 협조 요청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-1046(2023.3.21.)

3.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코로나19 스카이코비원 백신의 식약처 유효기간 연장 통지사항 적용에 따라 **포장상자 및 소분상자 스티커 상 유효기간과 제품에 부착된 라벨상의 유효기간이 상이하**여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안내해온바 귀회에 전달드리오니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○ 국가비축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효기간 연장통지('23.3.20. 식약처)

제품명	유효기간 연장	제조번호	당초 유효기한	연장 유효기한
스카이코비원멀티주	9→12개월	U0722004	2023.5.1.	2023.8.1.

○ 협조요청사항

- 3.23일 이후 배송되는 스카이코비원 백신 수령시, 필히 스티커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준수.
- 기 수령한 스카이코비원 백신 전량 소진 후 유효기간 연장된 백신 개봉 및 사용.

※ 붙임 :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. 끝.

# 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 : 16개 시도지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각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이사협의회장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